2023년 「과학기술분야 R&D 대체인력 활용 지원사업」 상반기 공고

과학기술분야 일·가정 양립지원 제도 활용 촉진을 위하여 2023년 상반기 「과학기술분야 R&D 대체인력 활용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.03.06.

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이사장 문애리

1. 사업 목적

- 과학기술 R&D 분야 재직자의 출산·육아휴직, 육아기 단축근로 등으로 발생하는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, 과학기술분야 일·가정 양립지원 제도 활성화
- 대체인력 및 인턴연구원, 전문박사연구원 등 R&D 분야 업무경력 기회를 제공하여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개발 지원

2. 지원 분야

○ 참여 기관의 인력 조건 및 활용수요에 따라 2개 트랙, 4개 유형으로 지원

항	모	[트랙1] 휴직·C	난축연구자 지원	[트랙2] 육아기	연구자 지원
	7	휴직제형	단축제 형	인턴연구원	전문박사연구원
지원 조건		출산·육아로 인한 휴직자 또는 단축근무자의 대체인력 신규채용 시		육아기 연구자의 유연근무를 위한 추가 연구인력 신규채용 시 ※휴직·단축근무 여부 무관	
지 내		인건비 지원 (학/석사) 2,1000만원/연 / (박사) 2,300만원/연 ※교육 필수참가(연1회)		인건비 지원 1,000만원(약 166만원/월) ※교육 필수참가(연1회)	인건비 지원 3,000만원/연(250만원/월) ※교육 필수참가(연1회)
지 기		3~15개월	3~12개월	6개 월 ※계속 고용 시 6개월 추가	최대 2년
신 청	인 력	이공계 학사 이상 소지자 ※성별 및 L		그쉬는 우 7년 ()내의 그 알퀴를 쉬는	
자격	기 관	출산, 육아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휴직자 또는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자가 있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		추가 연구인력	우연한 근무를 위해 채용이 필요한 야 연구기관
유의 사항		지원인력 시간선택제		동등학력 인정 불가 (인턴) 시간선택제 채용 불가 (전문박사) 연구행정업무로 채용 ‡	
지원 규모			008	병 내외	

※ 각 트랙별 지원조건과 유형을 참고하여 지원대상 별 1개 유형만 신청(중복 신청 불가)

I 지원 개요 및 신청 자격

[트랙1] 휴직 단축 연구자 지원

1. 지원 개요

- 가. 지원 내용 : 출산 또는 육아에 의한 휴직·근로시간 단축 연구자로 인해 업무 공백이 발생하여 대체인력을 신규 채용한 경우 인건비 및 교육훈련 지원
 - **인건비 지원** : 대체인력 신규 채용 시 인건비 지원
 - 소속기관의 인건비 지급기준을 따르되, 신청 인력에게 정부지원금을 포함 하여 **기준연봉 이상의 연봉 지급**

구분	학·석사	박사
정부지원금	2,100만원/연(175만원/월)	2,300만원/연(약 191.6만원/월)
기준연봉	3,000만원/연	3,300만원/연

- ※ 기준연봉 산정방법: (기본급 + 월정액수당, 퇴직금 제외) × 12개월(산출 기준은 기관별 내규에 따름)
- ※ 시간선택제 채용 가능. 이에 따른 정부지원금 산출 방법은 [참고1] 확인
- **교육훈련** : 지원인력의 연구역량 또는 경력개발 교육 참여(연 1회 필수) ※ 교육 내용 및 일정은 참여인력 대상 별도 안내 예정

나. 지원 조건 및 유형

- ① 휴직제형 : 출산, 육아, 기족돌봄 등의 사유로 **휴직제도를 사용한 연구자**가 있는 경우 ※ 단. 사업신청일 기준 휴직 잔여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
- ② 단축제형 : 임신, 육아, 가족돌봄, 건강 등의 사유로 **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한 연구자**가 있는 경우

※ 단축제형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

- 사업신청일 기준 단축제도 잔여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
- 단축제 사용자의 단축기간 중 근로시간 : 주 15~35시간, 연장근무 월 20시간 이내
- 단축제 사용자 및 지원인력의 4대 보험 가입
- 단축제 사용자 및 지원인력의 출퇴근 관리 필수(월별 관련 증빙자료 제출)
- 인수인계기간 및 단축기간 중 지원인력의 고용형태는 변함없이 유지
- 다. 업무 분야 : 연구직, 기술직, 연구행정직 등 연구개발 관련 업무 수행
 - ※ 휴직자(단축근무자)와 지원인력의 소속부서가 다르더라도 신청가능(단, 연구개발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함)

라. 지원 기간 : 최대 15개월(지원 유형에 따라 상이)

구분	① 휴직제형	② 단축제형	비고
사전 인수인계기간(A)	0~2개월	0~2개월	÷ = 0 = 1 = 1 = 0
휴직 또는 단축제 사용기간(B)	3~15개월	3~12개월	총 지원기간은 A, B, C 안에서
사후 인수인계기간(C)	0~2개월	불가] - 한에서 - 조정 가능
총 지원기간(A+B+C)	3~15개월	3~12개월	

※ 지원금은 학·석사 175만원/월, 박사 191.6만원/월 기준으로 지원 기간만큼 지급됨(예시) 석사가 15개월 근무 시 175만원 × 15개월 = 2,625만원

2. 신청 자격

가. 지위 인력

- **이공계 학사 이상** 학위 또는 동등학력(참고2) 소지자
 - ※ 의·약학, 치의학, 산업디자인 학위 소지자 신청 가능(단, 수행업무가 R&D 관련 업무이어야 함)
 - ※ 성별 및 나이 제한 없음
 - ※ 수료자는 해당 학위 취득자로 불인정
- 2023.01.01. 이후 신규 채용(예정)자
- 참여인력은 연구직, 기술직, 연구지원직 등으로 채용되어 연구개발 관련 업무수행

---- < 업무 내용 예시 > -----

- 기초연구, 기술 및 제품 개발, S/W 개발, 산업디자인, 특허 조사·분석, 시장 기술조사
- 연구장비·기자재 운용, 설계, 도면의 작성, 가공·조립, 실험·검사·측정
- 전문적 연구지원, 정보 가공·분석, 특허출원
- 시제품 설계 시험·제작, 기술마케팅, 기술영업, 기술협력 등
- 연구행정 업무

나. 지원 기관

○ R&D분야 재직자 중 출산, 육아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휴직(예정)자 또는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(예정)자가 있는 **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**

---- <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(어느 하나 해당 시) > ---

-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제6조 제1항 또는 제1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
-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
- 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제9조의3에 의한 연구소기업
- 「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」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(이노비즈)
- 「연구산업진흥법」제2조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
- 기타 지식재산서비스 및 학술연구용역 등 과학기술분야 관련 업무 수행 기관
- 지원기관 부서별 인력 1명 지원
 - ※ 부서는 기관의 조직도에서 가장 하위조직을 기준으로 하며, 연구·기술개발 업무수행 부서에 한함

[트랙2] 육아기 연구자 지원

1. 지원 개요

- 가. 지원 내용 : 육아기 연구자가 있는 연구팀에서 원활한 연구를 위한 인력을 인턴 또는 전문박사연구원으로 신규채용 할 경우 인건비 및 교육훈련 지원
 - ※ 육아기 연구자란?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남녀 연구자로 휴직 및 단축근무 여부 무관
 - **인건비 지원** : 인턴 또는 전문박사연구원 신규 채용 시 인건비 지원
 - 소속기관의 인건비 지급기준을 따르되, 신청 인력에게 정부지원금을 포함 하여 **기준연봉 이상의 연봉 지급**

구분	①인턴연구원 채용 시	②전문박사연구원 채용 시
정부지원금	1,000만원(약 166만원/월)	3,000만원/연(250만원/월)
지원기간	2023.06.01. ~ 2023.11.30.(6개월) ※ 인턴 계약기간 종료 후 고용 전환하여 계속 고용 시 <u>6개월 추가 지원</u>	2023.06.01. ~ 2024.05.31.(최대 2년) ※ 12개월 단위로 연차평가를 실시하여 계속지원 여부 결정
기준연봉	해당없음	4,500만원/연
지원조건	이공계 학·석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의 여성과학기술인	이공계 분야 박사 학위를 소지 한 여성과학기술인
시간선택제	시간선택제 채용 불가	시간선택제 채용 가능

- % 기준연봉 산정방법 : (기본급 + 월정액수당, 퇴직금 제외) \times 12개월(산출 기준은 기관별 내규에 따름)
- ※ 전문박사연구원 시간선택제 채용에 따른 정부지원금 산출 방법은 [참고1] 확인
- **교육훈련** : 지원 인력의 연구역량 또는 경력개발 교육 참여(연 1회 필수) ※ 교육 내용 및 일정은 참여인력 대상 별도 안내 예정
- 나. 업무 분야 : 연구직, 기술직 등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관련 업무 시 지원 ※ 인턴연구원에 한하여 연구행정 업무 수행 가능

2. 신청 자격

가. 지원 인력

- 2023.01.01. 이후 신규 채용(예정)자
- 인턴연구원 : 이공계 학사·석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(공고일 기준)의 여성과학기술인
 - ※ 박사 학위소지자는 제외하며, 동등학력 인정 불가
 - ※ 2023년 8월 졸업예정자 인정(졸업예정증명서 제출 필수)
- 전문박사연구원 : 이공계 분야 **박사 학위를 취득한 여성과학기술인**
 - ※ 박사 학위 취득 연도 관계 없으며, 동등학력 인정 불가
 - ※ 박사 학위 수료자, 졸업예정자, 비이공계 박사 학위 취득자 제외
- 참여인력은 연구직, 기술직, 연구지원직 등으로 채용되어 연구개발 관련 업무수행

----- < 업무 내용 예시 > -----

- 기초연구, 기술 및 제품 개발, S/W 개발, 산업디자인, 특허 조사·분석, 시장 기술조사
- 연구장비·기자재 운용, 설계, 도면의 작성, 가공·조립, 실험·검사·측정
- 전문적 연구지원, 정보 가공·분석, 특허출원
- 시제품 설계 시험·제작, 기술마케팅, 기술영업, 기술협력 등
- 연구행정 업무(인턴연구원에 한함)

나. 지워 기관

○ 육아기 연구자의 유연한 근무를 위해 추가 연구인력 채용이 필요한 **과학기술** 분야 연구기관

<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(어느 하나 해당 시) >

-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제6조 제1항 또는 제1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
-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
- 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제9조의3에 의한 연구소기업
- 「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」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(이노비즈)
- 「연구산업진흥법」제2조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
- 기타 지식재산서비스 및 학술연구용역 등 과학기술분야 관련 업무 수행 기관
- 연구팀* 당 인턴·전문박사 연구원 각 1명까지 지원 가능
- * 연구팀 : 기관 내 연구(프로젝트) 수행 단위 기준

U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
1. 신청 방법

가. 신청 기간 : 3월 20일(월) ~ 5월 8일(월) 23:59

※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나. 신청 방법 : W브릿지 사이트(www.wbridge.or.kr)에서 온라인 접수

다. 신청 조건 : 채용(예정) 인력을 확정하여 기관과 인력이 함께 신청

※ 인력과 기관 모두 신청해야 함

※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기관-인력 간 매칭을 위하여 W브릿지 이용 가능(별첨 확인)

2. 제출 서류

가. 지원 인력

구분	제출서류	제출 시 유의사항	비고
1	사업신청서	- 서명 또는 날인 필수(W브릿지 다운, 날인 필수)	
2	졸업증명서 사본	- 최종학위에 대해서만 제출	
4	정부 지원 일자리 참여내역서	- 워크넷(www.work.go.kr)에서 발급 ※ 마이페이지 → 온라인 신청관리 → 정부지원 일자리 → 일자리 참여내역 → 신청기간 포함하여 검색 후 본인 이름이 나온 캡쳐본 제출(전체화면 캡쳐) - 사업신청일 포함하여 검색 후 신청 이력의 유/무와 관계없이 제출 - 조회기간 최소 3개월 이상(사업신청일 포함)	필수
5	경력증명서	- 사업신청서에 작성된 이력사항에 대하여 제출 ※ 학사(전문학사), 비이공계 석·박사의 경우 필수	해당
6	기타	- 본인의 역량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- 동등학력 인정 필요시(트랙1 지원인력만 해당)	시

나. 지원 기관

구분	제출서류	제출 시 유의사항	비고
1	사업신청서	- W브릿지(www.wbridge.or.kr)에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제출	
2	사업자등록증 사본	_	
3	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, 연구개발전담부서인정서, 벤처기업확인서, 이노비즈 확인서, 연구소기업 등록증 등	- 해당 내용 중 택1 ※ 공공연, 대학 제외	필수
4	재무제표증명원 또는 회계감사보고서	- 2020~2022년 공시된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※ 국세청 또는 회계사(세무사) 확인(원본/날인) - 2022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2019~ 2021년 재무제표 제출 ※ 공공연, 대학 제외	
5	가점 증빙서류	 여성기업확인서 사본 가족친화인증서 사본 중소기업확인서 사본 우수기업연구소 인정서 사본 ※ 객관적 증명서류가 없을 경우 불인정 	해당 시

3. 신청 시 유의사항

- 기관과 인력 모두 사업 신청을 완료해야 함
- 제출 서류는 온라인 **신청 접수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**에 있어야 함
- 고유식별번호(주민등록번호 등)는 **비식별처리**하여 제출
- 날인이 없는 서류는 불인정 처리

4. 문의처

-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R&D경력복귀지원팀
 - 이메일 문의 : jksim@wiset.or.kr

Ⅲ 평가 방법 및 기준

1. 평가 방법

- 가. 신청서 및 관련 서류에 대하여 요건심사(재무건전성 평가) 및 전문가 평가를 시행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
- 나. 전문가 평가결과 60점(100점 만점) 미만 탈락, 재무건전성 평가결과 5점 이하(20점 만점) 탈락

2. 평가 기준

- 가. 요건심사: 접수된 신청서에 대하여 기본 자격요건 및 재무건전성 심사
 - 신청자격 부합성, 참여제한 여부,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헙여부 등 검토
 - 신청기관이 민간기업인 경우, 제출한 재무제표에 대한 재무건전성 평가 실시
- 나. 전문가평가: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의 서면평가
- [트랙1] 휴직·단축 연구자 지원

평가항목		평가지표	배점
	기관 역량	- R&D 수행규모 및 R&D 투자의 우수성 - R&D 수행 성과의 우수성 등	20
기업 평가	인력활용 계획	- 대체인력 활용 계획의 적절성 및 구체성 - 사업을 통한 지원 사유의 타당성	15
	근로환경	- 근무여건의 우수성(인건비, 복지제도) 등 - 인력의 고용안정성 확보 계획	15
	지원 필요성	- 대체인력 지원사업에 신청 동기 - 대체인력 사업을 통해 지원을 해야 하는 필요성	15
인력 평가	업무역량	- 지원 희망분야와 인력의 업무수행능력의 연관성 - 전공 분야 및 기존 경력의 부합성	15
	역량개발 계획	- 지속적인 경력 및 역량개발 포부 및 계획 - 개인의 R&D분야 발전 가능성	20
합계			100

WISET 공고 제 2023-039호

○ [트랙2] 육아기 연구자 지원

평가항목		평가지표	배점
기관	지원의 필요성	- 인력 활용 지원 필요성 - 인력양성 및 활용계획의 타당성 - 활용계획의 구체성 및 기대효과	30
평가	R&D 인력 활용 인프라	- 기관의 연구개발 성과 및 실적의 우수성 - 근무여건의 우수성(인건비, 근무시간, 복지제도) 등	40
인력 평가	인력매칭 평가	- 담당 업무(연구분야)와 전공 일치도 - 인력의 R&D 분야 경력 성장 가능성	30
합계			100

○ 우대가점: 트랙1 · 2 동일 적용

평가항목	평가지표	배점
	기관이 여성기업인 경우	1
	기관이 지방(서울, 경기, 인천 외의 지역)기업인 경우	1
	기관이 가족친화인증기관인 경우	1
	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	1
가점	기관이 우수기업연구소 선정 기업인 경우	1
	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(예정)인 경우 ※ 신청 시 정규직 채용(예정)으로 신청했으나 추후 협약 또는 사업수행 중 정규직 채용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	2
	과학기술분야 R&D 대체인력 채용 지원사업으로 채용한 대체인력이 사업종료 후에도 고용유지 중인 기관	1
합계		

IV 7

기타 유의사항

- 사업기간 동안 휴직자(단축제 사용자), 육아기 연구자의 고용이 보장되어야 함
- 채용한 지원인력의 4대 보험 및 퇴직금(12개월 이상 채용 시) 필수
- 지원기관은 신청 자격을 상시 유지하여야 함
- 정부지원금은 지원인력의 인건비로만 사용 가능
- 사업의 수혜를 받은 지원인력 및 기관은 지원종료 후 2년까지 인력의 경력 현황에 대한 육성재단의 조사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음
- 협약 진행 중, 협약 체결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함
 - 신청 제외대상 기관 및 인력이 지원을 받았을 경우, 다른 정부지원사업에서 인건비 이중수혜가 발생할 경우, 기관 및 인력의 신청자격이 유지되지 않은 경우 등
 - 이 경우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환수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
- 휴직자(단축제 사용자) 및 육아기 연구자가 퇴사하는 경우, 사업 협약은 유지됨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평가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
- 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및 인력은 상호간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, 기관은 인권경영 이행 및 조치에 협조해야 함
- 지원기관 및 인력은 평가 방법 및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(1회에 한함)
- 인턴·전문박사연구원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인력을 육아기 연구자로서 사업 신청 불가
- 협약기간 중 지원인력의 퇴사 등의 사유로 협약 지속이 불가할 경우, <u>1회</u>에 한하여 신규 채용한 인력으로 교체 가능
 - ※ 교체하고자 하는 인력은 기존 지원인력의 퇴사 이후 신규 채용한 인력으로 교체 가능
 - ※ 최초 지원금과 총 지원기간은 변경 불가
 - ※ 인턴연구원의 경우 지원인력 교체 불가

정부지원금 산정 안내

□ 정부지원금 지원 금액 : 학·석사 2,100만원/연, 박사 2,300만원/연

- 참여 기업은 소속기관의 인건비 지급기준을 따르되, 지원인력에게 정부지원금을 포함하여 **기준연봉 이상의 연봉 지급**
 - 정부지원금 : 기준연봉에 관계없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정급(1년 기준)
 - 기준연봉 : 기관이 본 사업 참여를 위해 채용대상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최소연봉(기준연봉 초과 가능)

< 협약기간 12개월 기준 정부지원금 산정 금액 >

구분	학・석사	박사
정부지원금	최대 2,100만원/12개월 (175만원/월)	최대 2,300만원/12개월 (191.6만원/월)
기준연봉(전일제)	3,000만원/연	3,300만원/연

- ※ 기준연봉 산정방법: (기본급 + 월정액수당, 퇴직금 제외) × 12개월
- ※ 정부지원금의 경우, 학·석사 175만원/월, 박사 191.6만원/월 기준으로 지원기간(협약기간)만큼 계상하여 지급됨

(예시) 석사 6개월 근무 시 175 × 6개월 = 1,050만원, 석사가 15개월 근무 시 175 × 15개월 = 2,625만원

□ 시간선택제 채용의 경우(육아기 연구자 지원 중 인턴연구원 채용시 불가)

- 지원인력은 시간선택제로 채용 가능하며, 이 경우 정부지원금은 채용한 인력의 연봉과 비례하여 산정
 - ① 시간선택제 채용자의 연봉 ≥ 기준연봉 ➡ 정부지원금 전액 지급
 - ※ (예시) 시간선택제 채용자 A(석사)의 연봉이 3.200만원일 경우
 - → 석사의 기준연봉이 3.000만원이므로 시간선택제 채용자의 연봉이 기준연봉보다 높음
 - → 정부지원금 2,100만원 전액 지급

② 시간선택제 채용자의 연봉 < 기준연봉 ➡ 정부지원금 차등 지급

[계산식] 시간선택제 근무 시 연봉 전일제 근무 시 연봉

- ※ 전일제 근무시 연봉은 지원기관의 인사기준 및 경력을 산정하여 기관에서 자체 결정 ※ (예시) 시간선택제 채용자 B(박사)의 연봉이 2.800만원일 경우
 - 71227 MION D(7M) A 2007 2,000 2 2 2 3 1

(전일제 근무시의 연봉은 3.500만원)

- → 박사의 기준연봉이 3,300만원이므로 시간선택제 채용자의 연봉이 기준연봉보다 낮음
- $\rightarrow \frac{\mbox{시간선택제 근무 시 연봉}}{\mbox{전일제 근무 시 연봉}} \times \mbox{정부지원금 전액} = \frac{2,800만원}{3,500만원} \times 2,300만원 = 1,840만원$ (전일제 근무시의 연봉은 참여 기업에서 확인)

신청 자격요건

□ (인력) 동등학력 인정 요건(<u>트랙1</u>. 휴직·단축 연구자 지원만 해당)

-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「국가기술자격법」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·기능분야의 기사 이상 기술자격을 가진 자
-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「국가기술자격법」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·기능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, 해당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자
-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로서 과학기술분야 연구직·기술직 등의 업무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
- 비이공계 학위 소지자로서(학·석·박사) 과학기술분야 연구직·기술직 등의 업무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
- ※ 상기 동등학력 인정 요건은 트랙2. 육아기 연구자 지원은 적용되지 않음

□ (기관)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기관

제6조(기초연구사업의 추진)

- 1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
- 2.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
- 3.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·산업대학·전문대학 및 기술대학
- 4. 국공립연구기관
- 5.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

제14조(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)

- 1.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
- 2.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
- 3. 「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」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
- 3의2.「협동연구개발촉진법」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
- 4. 「나노기술개발 촉진법」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
- 5. 「민법」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·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
- 6.「의료법」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·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
- 6의2.「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 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
- 7. 그 밖에 연구 인력·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

신청 제한 사항

□ 기관 제한 사항

-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(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)에 의하여 국가 연구개발활동에 대하여 참여 제한을 받은 경우
- 제재조치 등 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
- 임금체불, 노동법 위반 등 2회 이상 **반복적으로 민원이 발생**한 기관
- 다음의 '신청제외 기관'에 해당하는 경우(비영리기관 제외)

< 신청제외 기관 >

- 1. 기업의 부도
- 2.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(단, 회생인가 받은 기업,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예외)
- 3.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(단, 회생인가 받은 기업,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·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예외)
- 4.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(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)
- 5. 기업의 경우 최근 결산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
- 6.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연도 결산감사 의견이 "의견거절" 또는 "부적정"

□ 인력 제한 사항

- 고용창출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인건비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자(중복지원 불가)
 - ※ 정부지원 일자리 참여내역 확인 : 워크넷 로그인 → 마이페이지 → 온라인 신청관리 → 정부지원 일자리 → 일자리 참여내역 → 신청기간 포함하여 검색
 - ※ 교육훈련 참여 및 참여기간이 종료된 건은 중복에 해당하지 않음
-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
- 학위과정 중인 자 신청불가
- 제재조치 등 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
- 신청기관의 기관장(사업주)과 친족 관계에 있는 자
 - ※ 사업기간 중 친족관계인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원 중단 및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함

< 친족관계>

【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 2 제1항】

- 1. 6촌 이내의 혈족. 2. 4촌 이내의 인척
- 3. 배우자(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)
- 4.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·직계비속

사업 연간일정

절차	내용	수행주체
사업 공고	· 신규 참여기관 및 인력 모집 공고	WISET
†		
사업 신청	· 신청서 접수(온라인) · www.wbridge.or.kr	참여기관 및 인력
1		
적격성 평가 및 선정	· 선정결과 및 승인 통보	WISET 평가위원단
1		
협약체결	· 참여 기관에서 WISET에 신청	참여기관
사업비 지급	· 협약체결 후 사업비 지급	WISET
1		
	· 참여기관의 인력활용 및 사업수행	
사업 수행	· 대체인력의 연구개발 수행 등 · 대체인력 및 휴직자 대상 교육 실시	참여기관 및 인력
1		
중간 · 격월점검 및	· 사업수행 중간·격월점검 및 현장점검 실시	WISET
현장점검		
1		
사업비 정산	· 사옹실적보고서에 대한 회계정산 실시	WISET

- ※ 지원 절차는 상·하반기 별도 운영
- ※ 상기 절차 및 일정은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관련하여 별도 안내 예정